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2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31 호

## 군포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물품관리관 등의 지정) 중 1호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물품관리관 : 경영기획실장
2. 물품운용관 : 재무회계팀장
3. 분임물품운용관 : 각 부장, 혁신기획팀장, 정비사업팀장
4. 물품출납원 : 계약담당 직원
5. 분임물품출납원 : 서무담당 직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)

①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관, 항, 세항, 목”은 “정책, 단위, 세부, 목”으로 하고, “이사장”은 “사장”으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영 윤 ( 3 9 0 - 7 6 1 9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물품관리관 등의 지정) 물품관리관, 물품운용관, 분임물품운용관, 물품출납원,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물품관리관 : <u>경영시설본부장</u></li> <li>2. 물품운용관 : <u>경영지원부장</u></li> <li>3. 분임물품운용관 : 각 부장</li>   <li>4. 물품출납원 : 계약담당 직원</li> <li>5. 분임물품출납원 : 서무담당 직원</li> </ol>	<p>제3조(물품관리관 등의 지정) 물품관리관, 물품운용관, 분임물품운용관, 물품출납원,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: <u>경영기획실장</u></li> <li>2. ----- : <u>재무회계팀장</u></li> <li>3. ----- : ---, <u>혁신기획팀장, 정비사업팀장</u>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